

제 28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3. 2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전문위원 허 은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31
- 나. 발 의 자: 송순호 의원 외 7명
- 다. 발의일자: 2022년 3월 11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2. 제안이유

로컬푸드의 이용촉진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나. 조례의 기본이념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유통 지원, 소비촉진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
마. 로컬푸드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)

바.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지역경제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3. 11. ~ 3. 16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

- 로컬푸드(지역농산물)의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 등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 - 로컬푸드: 강서구 지역에서 생산·가공된 농산물
 - 로컬푸드 직매장: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·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 예시) 강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
- 안 제3조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,
 -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

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

-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

○ 안 제4조는 책무 규정으로 제1항 생산자의 책무, 제2항 소비자의 책무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

- 생산자는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
- 소비자는 로컬푸드의 우선 사용

○ 안 제5조는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 수립·시행으로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산물직거래법”) 제6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
○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

- 안 제6조는 유통 지원으로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과 로컬푸드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
- 안 제7조는 소비촉진으로 공공부문 급식 및 식재료 제공사업 등에 로컬푸드 우선 사용
- 안 제8조는 홍보 지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, SNS를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, 로컬푸드 소비 관련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
- 안 제9조에서는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근 시·군·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「농산물직거래법」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
- 서울지역의 특성상 로컬푸드의 직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나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농지(940ha)의 39%인 365헥타르(ha)가 위치하고 있으며, ※1ha = 10,000m² 약 3,000평
- 서울지역 농협에서는 최초로 강서농협 본점에 2018년 10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점하였고, 2021년 3월 마곡지구에 강서 2호점을 개점하여 서울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를 선도하고 있음
-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운영한 2018년 3억 8백만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21년 말 현재 8억 5,600만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성장되었으며,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주민들 사이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
- 인근 경기도 지역에 비해 작은 농업규모와 농산물의 수확, 포장, 가격 결정 및 매장진열까지 모두 지역농업인이 직접 수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특성상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
- 강서구는 도시지역에서는 드물게 넓은 농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농업 및 도시농업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구민정서 함양에 힘써왔으며,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 및 도시지역에서의 로컬푸드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참고**서울시 농지 및 강서구 로컬푸드 현황****□ 서울시 농지현황**

(단위:ha헥타르)

서울시	강서구	서초구	강동구	강남구
940	365 (38.8%)	354.7	71.2	50.5

※ 서울시내 농지 50ha 이상 자치구 - 강서, 서초, 강동, 강남 4개구

□ 강서구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

명칭	개점일	면적	위치	비고
강서농협 강서1호점	18.10.17.	120㎡	금남화로 287-10	서울지역 최초
강서농협 강서2호점	21.03.19.	48㎡	양천로30길 123-28	마곡지구 내

※ 농협 하나로마트 내 샵인샵(shop in shop) 형태

□ 로컬푸드 직매장(강서농협) 매출현황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매출액	308백만원	611백만원	771백만원	856백만원
성장률	-	98.4%	26.2%	11.0%

□ 연도별 출하량 및 출하자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매출수량 (출하자수)	108,673점 (59명)	266,635점 (64명)	281,502점 (59명)	305,972점 (66명)
성장률	-	145.4%	5.6%	8.7%

□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생략
2. “지역농산물”이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구는 “자치구”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생산·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·판매되는 것을 말한다.
3. ~ 9. 생략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,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2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
3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
4.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9조(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

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,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·개설·운영, 판로개척, 컨설팅,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역농산물 우선구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,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·백화점·소

평센터 및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,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·단체급식 등 사업자,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지역농산물 품질개선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.